

『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휴일 등 공용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기간에 취약계층과 공유하여 이동수단 및 여가활동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생활 편의제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,
- 더불어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이용대상자, 범위, 신청, 승인 방법(안 제3조~제6조)
- 운전자의 자격, 차량 출입고 절차(안 제7조~제8조)
-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시 조치, 이의신청(안 제9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·한부모·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공용차량 공유사업은 2016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·시행하여 중앙부처 우수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것으로 파악됨.
- 정부에서도 공공자원 개방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용차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(2019. 7. 2.)한 바 있음.
- 관광·문화 등 여가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차량의 소유가 보편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,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, 한부모, 북한이탈주민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.
-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·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용차량 관리 부서와 취약계층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,
-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요율 증가 대책, 전담 직원 지정, 기타 효율적 운영방안 등 타 시·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 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유희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